

종합감사

정기종합감사 보고서

-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

2022. 4.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2022년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감 사 실 시 】

- 감사기간 : 2022. 2. 14. ~ 2. 18.(5일) ※ 사전조사 : 2.7.~2.8.(2일)
- 감 사 반 : 2개반 9명
 - 농업기술원 : 5명(자체감사팀장 외 4)
 - 인재개발원 : 4명(시군감사팀장 외 3)
- 감사범위 : 2019년 1월 ~ 2022년 1월

I | 감사개요

1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각종 위법·부당사항의 시정, 잘못된 예산집행의 개선을 통해 기관운영의 적법성 확보
-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우리 도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2 |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사 운영,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
- 규정, 규칙 등 제·개정 적정성
-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 각종 기자재 및 시설 관리실태의 적정성 등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현원

구 분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조 직	2국 5과 7연구소 23팀	2과 8팀
정/현원 (증△감)	154/139 (△15)	34/31 (△3)

2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세입	39,046	869
세출	73,639	4,960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감 773	감 1,514

3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 전남농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및 보급 ○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 전남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설 및 청사 관리, 교육생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 발전 과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과정별 설문조사 및 평가 ○ 중장기 교육과정(「미래인재양성」, 「신규 임용(후보)자 기본교육」) 운영 ○ 국·도정 시책 및 역량강화과정 교육 운영 ○ 직무교육, 현장교육, e-러닝 교육과정 운영

Ⅲ 기관별 감사총평

- 농업기술원과 인재개발원은 복무, 계약, 예산, 주기능 분야 등 전반에 걸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총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가 확인되어 “도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함
 - ※ 신분상 3건, 행정상 30건(재정상 11건, 855백만원 포함), 모범사례 3건
- 이번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된 사항은 농업기술원과 인재개발원에 통보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함

주요 지적사항

- ▶ 농업기술원은 건강검진 관련 복무관리 소홀과 연가보상비 부당수령자에게 훈계처분과 부당수령액 회수 시정조치를 하였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당지급 된 퇴직금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조치 하였으며, 임대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총 공사비 88억 8,612만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8억783만원을 환급신청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담당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함
- ▶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을 운영하면서 교육훈련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중견리더양성과정 현장학습 평가 관련 부적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매입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지를 매입결정 한 담당에 훈계처분하며,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등 위수탁 계약업무와 인쇄물 발간, 청사 조경 업무 추진 시 계약 업무 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한 계약에 대해 시정과 주의 요구함

IV 감사결과

1 감사처분 건수: 33건

○ 신분상 처분 : 3건(징계 1명, 훈계 15명)

○ 행정상 처분 : 27건(시정 11*, 주의 8, 개선 3, 통보 4, 권고 1)

* 재정상 조치 : 11건 855.8백만원(회수 47.8, 환급 808)

○ 기 타 : 3건(모범사례)

- 자가망 이용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비대면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 대응 교육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개발원 운영

○ 세부내역

대상 기관	총계 (가: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사전 건설 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합계	33	3 (16명)	1 (1명)	2 (15명)	27	11 (855.8)	6 (855.8)	5 (47.8)	- (-)	- (-)	1 (808)	5	12	-	4	-	3	-
농업 기술원	18	2 (14명)	1 (1명)	1 (13명)	15	7 (835.8)	4 (835.8)	3 (27.8)	- (-)	- (-)	1 (808)	3	6	-	2	-	1	-
인재 개발원	15	1 (2명)	- (-)	1 (2명)	12	4 (20)	2 (20)	2 (20)	- (-)	- (-)	- (-)	2	6	-	2	-	2	-

V | 주요 지적사항

[농업기술원]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보수지급 부적정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보수 지급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 기술 개발 업무 등 36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4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과수연구소)은 '○○○○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와 '19. 2. 1.부터 '19. 12. 31.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31. 사업이 종료되자
 -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의 근로계약을 변경한다는 내부결재만을 통하여 '★★★★'으로 '19. 8. 1.부터 '19. 12. 31.까지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 기간 추진했던 3건의 사업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를 연속 고용하는 등
 - '19년부터 '21년까지 14건의 개별사업, 5명에 대하여 새로운 공고를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 더욱이 ☆☆☆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 기술 개발 사업'이 '19. 7. 31. 종료되었고, '19. 10. 24.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19. 12. 2.부터 '19. 12. 5.까지 4일간 근무하게 하여 급여 299,560원을 추가로 지급
-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평하고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2.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담 지급

- 농업기술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104건, 2억9,094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 등)은 '19년부터 '21년까지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37명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053만원의 예산을 낭비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게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다만, “형식적인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기 지급된 퇴직금은 미회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업 종료 기간과 계약종료 기간을 일치시켜, 채용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② 건강검진 관련 복무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 농업기술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사유로 451회에 걸쳐 공가를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공무원(공무직 포함)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자원경영과 등)은 '19년부터 '21년까지 자원경영과에 근무하는 ☆☆☆ 등 총 13명(17회)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공가를 허가
-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자원경영과 ☆☆☆ 등 총 8명은 부당하게 공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연가로 대체하여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가로 그대로 인정하여 연가보상비 10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13명에게 “**훈계**” 조치

☞ 부당한 공가를 인정함으로써 연가보상 잔여일수가 발생하여 지급한 연가보상비 **11건, 107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③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중복 구입 등 예산 낭비

1.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중복 구입

- 농업기술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장비심의회를 거쳐 5천만원 이상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11대를 9억 4,229만원에 구입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 농업기술원은 연구분석장비를 사용 용도가 중복되어 과다 보유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동일한 용도의 연구 분석장비는 다른 연구소와 함께 공동 사용하는 방법 강구 등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함
 - 그런데 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 등)은 '19년부터 '21년까지 다중가스검출기를 축산연구소와 친환경농업연구소, 동결건조기를 과수연구소와 축산연구소가 각각 구입하는 등 동일 목적 연구분석장비를 6대, 5억 1,586만원의 연구소별로 구입
-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다중가스검출기 등 동일 품목의 5천만원 이상 고가 연구분석장비 6대를 중복 취득하여 5억 1,586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2.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
- 농업기술원의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 예산 편성은 해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타 기관 기간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
- 또한 감사관이 '22. 2. 18. 감사일 현재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기관의 출퇴근용 버스 임차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원만이 유일하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임차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청사에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19년부터 '21년까지 1억 7,721만원의 예산을 집행
- 그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료 1억 7,721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고가의 연구분석장비에 대한 중복구입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4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 농업기술원(농촌지원과)은 농산업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시설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원내 2개 시설 4,550㎡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1년 5월에 '◆◆◆◆'을 준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농촌지원과 등)은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비 88억 8,612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8억 783만원을 감사일인 '22. 2. 18. 현재까지 공제 신청이나 환급신청도 하지 않음

☞ ◆◆◆◆◆◆◆◆ 조성공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8억 783만원 공제 또는 환급 신청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⑤ 검수조서 허위작성 등으로 예산 부당 집행

1.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 부당 집행

-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은 침체된 전남의 차 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19년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제작 추진
- 「지방회계법」 제5조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4항에 일상경비로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차산업연구소에서는 '19년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납품이 안된 것을 알면서도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금 460만원을 집행
- 그로 인하여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납품하지 않고 있는 해당 업체에게 46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결과 초래

2.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박스 사업 부당 집행

-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은 '21년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1항내지 4항에 지출의 절차는 지출원인행위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고, 제조·물건의 매입 등에 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
 - 그런데 차산업연구소는 □□□□과 구두로만 계약과 발주를 한 채 스틱형 녹차믹스 3,240각을 미리 납품받아 '21. 8. 18.에 중국에 수출 상차식 행사를 추진

- 그 후 실제 사업이 종료된 '21. 8. 19.부터 '21. 9. 15.까지 물품계약, 납품, 검수 등을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계약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금 972만원을 집행
- 더욱이 □□□□의 실수로 인한 수출용 포장재 박스의 유통기한을 오류 표기함으로써 포장재 박스 추가 제작이 필요하게 되자 '21. 9. 14.부터 '21. 9. 23.까지 포장재 박스 추가 제작비 299만원을 추가 지원
- 그로 인하여 차산업연구소는 물품구입을 계약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포장재 박스 추가 제작비를 대신 부담하여 299만원 예산 낭비 초래

- ☞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사업비와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재 박스 제작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담당 연구관(팀장)에게 “경징계” 조치
- ☞ 납품하지 않은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사업비 46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조치
- ☞ 앞으로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재 제작사업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⑥ 도 소유 특허기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1. 도 소유 특허기술 실시료 부과 부적정

-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유 특허기술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
-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서」 제6조에 실시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료 납부 전에는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은 '19년부터 '21년까지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59건 중에 '19년 1건, '20년 7건, 합계 8건에 대하여 짧게는 13일, 길게는 119일 지연시켜 실시료를 납부 받음
 - 그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연구소는 실시료가 체납되어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시권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어 제품생산 및 사업화를 지연시킬 우려

2. 통상실시권 계약만료 정산 미실시

-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직무발명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서」 제8조 제1항과 2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특허기술 실시권자에게 실시상황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산하고, 추가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추가 수입조치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친환경농업연구소는 '19년부터 '21년까지 특허기술 계약기간이 만료된 34개 실시권자에게 실시상황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실시료 누락 우려

☞ 도 소유 특허기술 계약이 만료된 34건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정산하며, 추가 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추가 수입조치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앞으로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전까지 실시료를 부과하여 사전 납부하도록 하고, 특허기술 계약이 만료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7 □□□□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 10월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 신축공사” 등 4건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 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 신축공사” 등 4건에서 시험 시공 결과를 미 반영 등으로 2,203만원* 감액 및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 □□□□(246만원), ◎◎◎ ◎◎◎ 축사(1,091만원), ◎◎◎◎◎◎ 조성(663만원), ◎◎◎◎◎◎◎장(203만원)
-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2,203만원 예산낭비 초래

☞ 미시공분에 대한 사업비 2,203만원을 감액·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⑧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 1월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3건 및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실시설계 용역 2건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중복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지반조사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미등록
- 그로 인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를 활용하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초래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9]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 1월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84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28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
- 「지방계약법」 제20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10개 부서)은 하자검사 대상 128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304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111회(시행률 36%)만 실시하였고
 - 최종 하자검사 대상 54건은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 그로 인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적기에 보수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의 경우 별도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하여 예산낭비 우려 초래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10 공유재산 관리 업무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 1월부터 '22. 2월까지 공유재산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재해 등에 대비하고 소속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
-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등에 관사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소속공무원이 사용하여야 하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과수연구원)은 소속직원들이 일정 기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허가나 허가취소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하게 함
 - 또한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 하지 않는 등 관사운영을 소홀히 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지자체장은 건물, 선박 및 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중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곤충잡업연구소 등 4개부서)은 꿀벌 사육사 등을 신축하였는데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 하였고, 축사 등을 증축하였는데도 증축 면적을 기존 가입한 공제에 미반영
 - 또한 콤바인과 송풍기 등 1억원이 넘는 기계를 구입하였는데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
 - 그로 인하여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 초래

☞ 신축 및 증축한 건축물과 1억 이상 물품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11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농업기술원은 '19. 1월부터 '22. 2월까지 지출의 편의를 위해 부서별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지출업무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조 등에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등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7개부서)은 '19. 1월부터 22. 2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총 1,389만원에 대하여 567만원만 세입조치하고 166만원은 소멸하였으며 656만원은 방치
 - 그로 인하여 166만원의 포인트 회수 기회를 상실하고 656만원의 잔여포인트 또한 소멸될 우려 초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조 등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 따라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9개부서)은 '19. 1월부터 '22. 2월까지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지 않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6일까지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고 연체료 32,807원을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지출
 - 그로 인하여 연체에 따라 카드사용이 금지되어 해당 카드의 이용을 못하게 되는 등 법인카드 이용대금 회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 초래

- ☞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세입조치 하지 않은 포인트 656만원을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등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 따라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인재개발원]

① 생활관 관리 부적정

- 인재개발원은 강진군으로 이전한 '21. 4월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95일의 생활관을 교육생 합숙생활시설로 관리·운영 중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공무원은 청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되고, 교육원 공무원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 이용하는 행위를 그 예시로 명시
 - 또한 「지방공무원교육법」 제23조에 교육훈련기관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무상으로 시설 제공이 가능하고,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면 사용료의 30%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도 강진 이전에 따른 직원 출퇴근 불편 및 주거 불안정 해소 목적에서
 - '21. 3. 22. 생활관 7실을 사용료 30%를 감면하며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생활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21. 4월부터 6월까지 소속 직원 13명이 생활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210만원을 감면*받도록 함
- * 1인 감면액 : (최대) 17.1만원, (최소) 11.2만원 / 1일 감면액 : 1.5만원×30%
-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건립된 생활관이 직원 숙소로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인재개발원 생활관 등 공용물이 공적 목적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훈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정·안건·회의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같은 조례 제13조 등에 위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교육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심의위원 ○○○ 등 7명에게 참석요구 미통지하고 심사위원 전원에게 회의자료 미배부
 - * '19년) ○○○ 등 4명 미참석, 회의자료 미배부, '20년) ○○○ 등 3명 미참석, 회의자료 미배부
 - 또한 심의위원 ○○○등 2명은 '19년부터 '20년까지 위촉기간 내에 1회도 참석하지 않아 심의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21년에 재위촉
 - 그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안) 검토가 되지 않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7 위원회 참석수당에 2시간 이내는 '19년은 7만원, '20년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 등 9명에게 1인당 12만원을 지급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총 30만원을 초과 지급
 - * '19년) ○○○ 등 4명(x 과 지급 5만원) 20만원, '20년) ○○○ 등 5명(x 2만원 과 지급) 10만원
 - 그로 인하여 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의고지 및 자료배포 등을 철저히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③ 교육훈련 운영업무 추진 부적정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은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추진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부적정

- 「지방공무원 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교육훈련 기본방향, 교육훈련 과정의 설치계획,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 대상 선발 계획, 교재편찬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교재편찬 계획을 누락한 채 교육훈련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
 - * 수감기간 중 교육 최소인원 미달로 폐강('21 제1기 공무원 행정능력 향상 과정)
 - 또한 '교육훈련계획(안)'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도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재편찬 계획을 누락하여 부의
 - 그 결과 부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소홀하게 개최되는 결과를 초래

2. 중견리더양성과정 현장학습 평가 부적정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소속 교육생의 국내·외 현장학습 후에 현장학습 평가를 하지 않고 10점으로 일괄처리하였고 그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에도 미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 '19 : (국외) 미국, 쿠바, 캐나다, 프랑스 등 (국내) 서울, 부산, 무주 등
 - ** '20 : (국내) 제주, 평창, 가평 등
 - 그 결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

3. 교육생 식대정산 부적정

-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 관리 지침」 제11조 등에 식사 값 등 공동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종료시**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교육운영과가 협의하여 **정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20년부터 '21년까지 **교육 취소** 등의 사유로 **17건, 43만원**의 식비 정산 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미환불**
 - 그 결과 17명의 교육생에게 43만원의 금전적 손실 초래

4. 교육생 여비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VII.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별표 3에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비합숙한 경우는 **숙박비는 지급할 수 없고** 운임·일비·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기숙사 시설인 행복관을 운영하여 비합숙 교육생에게 **숙박비는 지급이 안되고** 운임·일비·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341명 교육생에게 숙박비 등 1,928만원을** **과다 지급**
 - 그로 인하여 1,928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과다 지급된 교육여비 1,928만원은 회수하고, 정산하지 않은 식비 43만원을 환불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앞으로 교육훈련계획에 교육 수요조사결과, 교재편찬 계획 및 현장학습 평가 계획을 규정에 따라 수립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④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 잔여지 매수업무 부당 처리

□ 인재개발원은 '15. 12. 17.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를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으로 확정하고, 사업비 478억원(건축비 377, 부지매입 59, 교육장비 42)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공익사업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협의 불가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하도록 규정

* 인재개발원 부지편입 현황 : 78,150㎡(군유지 23필지 78,50㎡, 사유지 17필지 31,751㎡)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여부 판단 참고기준」에 잔여지는 ①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5m 이하로 좁고 길게 남은 부정형, ② 부지 편입으로 교통, 용·배수 차단, ③ 잔여 면적이 330㎡이하, ④ 면적 비중이 전체토지의 25% 이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19. 8. 20. 민원인(○○○)이 '가옥이 편입되어 건축 및 영농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유로 사업부지에 기 편입된 4개 필지에 연결된 잔여지 357㎡ 매수 요청에 대하여,

- 「토지보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잔여지 매수 대상이 아닌데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검토하여 매수 결정

※ 관련규정 검토결과

- | | |
|--------------------------|-----------------|
| ① 폭이 5m 이하로 농기계 회전 가능 여부 | ⇒ 폭 6m로 회전 가능 |
| ② 교통, 용·배수 차단 여부 | ⇒ 차단 없음 |
| ③ 면적이 330㎡ 이하 | ⇒ 357㎡로 해당없음 |
| ④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25% 이상 편입 | ⇒ 해당지번 편입 면적 없음 |

○ 그로 인하여 잔여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6,759만원이 집행되었고, 해당 잔여지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계획 없이 방치

2. 토지 보상업무

- 인재개발원은 '18. 6.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아 사유지 17필지 31,751㎡ 보상업무 추진
- 「토지보상법」 제81조에는 인재개발원이 토지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실적이 있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인재개발원은 '17. 3. 20. 사유지 보상업무 사업대상자를 강진군으로 지정하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강진군이 위탁받은 사유지 보상업무를 2017. 4. 26. 전남개발공사로 재위탁하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는데도, 협약 해지 등 시정요구 없이 완료
 - 그로인해 보상업무의 위탁 권한을 받지 않은 자가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결과 초래

3. 자치단체 공기관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및 위탁수수료 지급 부적정

- 인재개발원은 '18. 12. 28. 신청사건립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건립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같은 협약서 제5조제2항에 전남개발공사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인재개발원은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요청 시 14일 이내 지급, 자금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 또한 건립사업 대행의 대가로 공사비의 5.68%인 2,141백만원 위탁수수료를 준공될 때까지 협약체결 후 30%, 착공 시 30%, 준공 시 30%, 준공정산 후 10%를 나누어 지급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17. 1. 20.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집행계획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1. 4. 13.인데도 '17년 2월부터 '20년 7월까지 377억원 전액 집행
 - 또한 토지보상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이 변경 되었는데도, 전남개발공사의 자금지급 요청에 대해 검토 없이 청구한 금액대로 지출
- * 개발공사가 '20. 3월 사업비 청구 당시 전월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68억원

- 그리고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물은 2021. 4. 21. 사용승인 됐는데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2021. 12. 29. 계약 체결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정산 미이행
- 그로 인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위탁사업비 정산이 지연되어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결과 초래

4.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인재개발원은 '19년부터 '20년까지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시설부대비 19백만원을 편성하여 15,112천원을 집행
-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등에 자치단체는 세출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련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2. 시설비 및 부대비 12-2 시설부대비 편에는 감독공무원의 여비 체재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19. 9월부터 '20년 6월까지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 등 29명에게 70회에 걸쳐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여비로 집행

- ☞ 신청사 건립사업의 잔여지 보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담당자 및 담당 팀장 등 2명에게 "훈계" 조치
- ☞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비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집행 잔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⑤ 강사비 수당 지급 및 강사 수송차량 임차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

1. 강사비 수당 지급 부적정

- 인재개발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20년 10월부터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원격강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원거리 강사가 웹캠, 마이크를 구비하면 본원에 출강하지 않고도 강의가 가능
-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광주, 전남, 전북 이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경우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으로 강사 등급에 따라 시간 보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운영평가과)은 외래강사가 인재개발원 본원으로 출강 없이 원격강의 한 ○○○ 강사 등 7명에게 시간보상수당 70만원을 지급
 - 그로 인해 강사의 시간보상수당 산정 부적정으로 예산 70만원 낭비

2. 강사 수송차량 임차용역 예산 낭비

- 인재개발원은 '21. 4. 9. 강진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원거리 강사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내 외 인재개발원 출강강사를 대상으로 목포역, 강진터미널, 인재개발원을 운행하는 24인승 승합차를 지원
 - * 계약 개요 : (계약대상) ㈜한국관광 / (계약금액) 7,971천원 / (단가) 263천원/대·1일
-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강사수송을 위해 체결한 24인승 강사 수송차량이 '21.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명 또는 2명의 강사를 수송하고 있는데도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음
 - 그로인해 24인승 강사 수송차량이 1명 또는 2명의 강사를 수송하여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과지급 된 시간보상수당 7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강사 수송차량 운행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조치

⑥ 구내식당 위수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인재개발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1. 3. 26. (주)○○○○○○와 '21. 4. 5.부터 '23. 4. 4.까지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

1.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7인 이상 10인 이내)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1.3월 위탁 운영업체 선정 시 관련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예비명부 미작성, 고유번호 미부여와 입찰참가자의 평가위원 번호 추첨 과정 없이 내부직원(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평가 실시
 -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취지를 훼손시키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2.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 산정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등에 사용료 산정은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물품은 물품평가액의 6%이상으로 대부 재산을 평가하고 시가표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1.3월 구내식당 사용료 산정당시에는 신청사 이전 완료('21.4.1.)전으로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담당자 임의로 구 건축물(정다산교육관)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산정
 - 또한 물품 사용료는 당초 냉장고 등 24개, 약 370만원이라고 산정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주방설비 등 물품 목록 재확인 결과 실제로 총 76개, 약 580만원으로 약 200만원의 물품 사용료 차이가 발생
 - 그 결과 정상적인 사용료는 2,700만원인데도 약 600만원이 적은 2,100만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감소 초래

3. 구내식당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항 미이행

3-1. 공공요금 경비부담 부적정

- 「위탁 운영 계약서」 제7조에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식재료비,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전기요금은 '21.8.13.부터 구내식당이 별도 납부하고 있는 반면 상하수도요금은 '21.4.5.부터 '22.2.18. 감사일 현재까지 인재개발원이 구내식당 사용분* 포함 총 780만원 납부
- ※ 인재개발원과 구내식당 간 상하수도 사용량 계측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않아 구분 산정 불가

3-2. 구내식당 운영실적 미공개

- 「위탁 운영 계약서」 제15조에 위탁운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 수입·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인재개발원에 제출하고, 월간 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또한 「위탁운영계약서」 제11조에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 사용, 친환경 식자재 1개 이상 사용, 가공식품 제외 전남 생산 식자재 80%(금액대비)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1. 4. 5.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 운영업체가 운영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결산보고서 제출요구를 단 한번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그로 인하여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른 위탁 조건의 성실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전반 감독 소홀하게 되는 결과 초래

- ☞ 구내식당 상하수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납부 되도록 “시정요구” 조치
- ☞ 구내식당 위·수탁사업 계약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따라 구내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 조치

7 인쇄물유인 등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총 38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교육교재 등을 14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1. 인재개발원 교육교재 등 발간 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판로지원법」 제7조 등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연간 구입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합 구매가 가능한 소모품은 미리 단가계약이 가능하고, 인쇄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하도록 규정
- 또한 「전라남도 소액경인쇄물 발주 전자추천시스템 운영규정」에 인쇄물 계약시 과도한 인쇄비 견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2,000만원 미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인쇄물은 전자추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19년부터 '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교육과정별로 총 385회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약 4,916만원의 예산 낭비 초래

(단위: 부, 원)

회계연도	발행부수	계약횟수	계약금액(A)	입찰시 계약예정금액(B)	예산절감 가능금액(A-B)
2019~ 2021년	24,641	382	409,517,650	360,355,056	49,162,594

- ※ 16년 道 종합감사 시 교육교재 발간에 따른 예산 절감 미흡으로 통합발주 등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7년(하반기) 단가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하고 2018년부터 단가계약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감사지적사항 무시하고 개별계약으로 교육교재 발간 중

2. 인재개발원 청사 조경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청사이전에 따른 조경관리를 위해 '21. 5월부터 '21.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공운영비로 조경 유지관리비 6,400만원 집행

2-1.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될 사업을 공공운영비로 집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공공운영비는 전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냉·난방용 연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 비용투입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수리비 등은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1. 5. 26.부터 '21. 12. 3.까지 총 6회에 걸쳐 추진한 조경유지관리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공공 운영비로 집행

2-2. 조경수목 유지관리 사업 통합발주 미이행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이나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1. 5. 26.부터 '21. 12. 3.까지 조경유지관리 사업을 총 6회에 나눠 강진군 소개 (주)☆☆☆☆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여 경쟁입찰 시보다 약 4백만원 예산 절감 기회 상실

- ☞ **연간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교재 발간 시 단가계약 또는 소액경인쇄물 전자추첨시스템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1 자가망 이용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농업기술원)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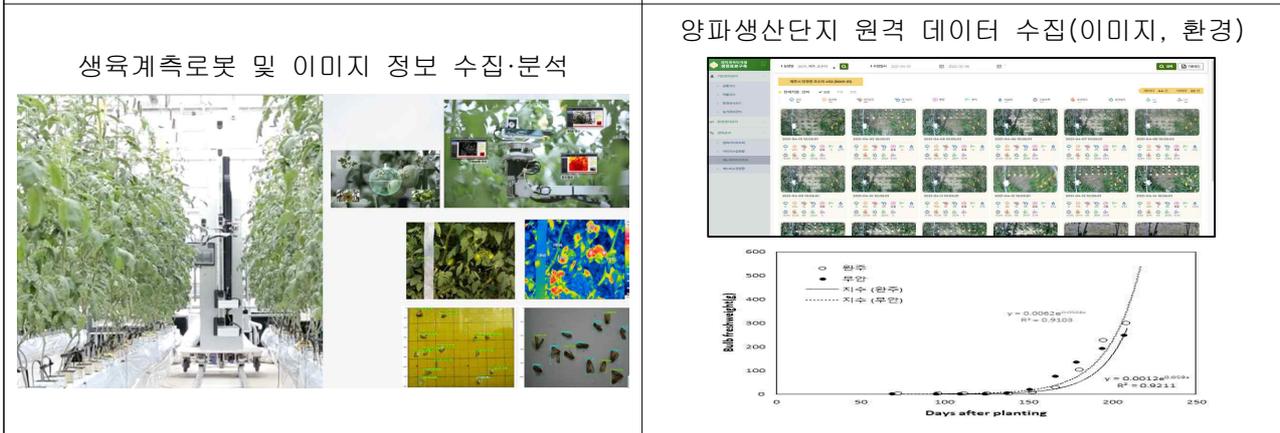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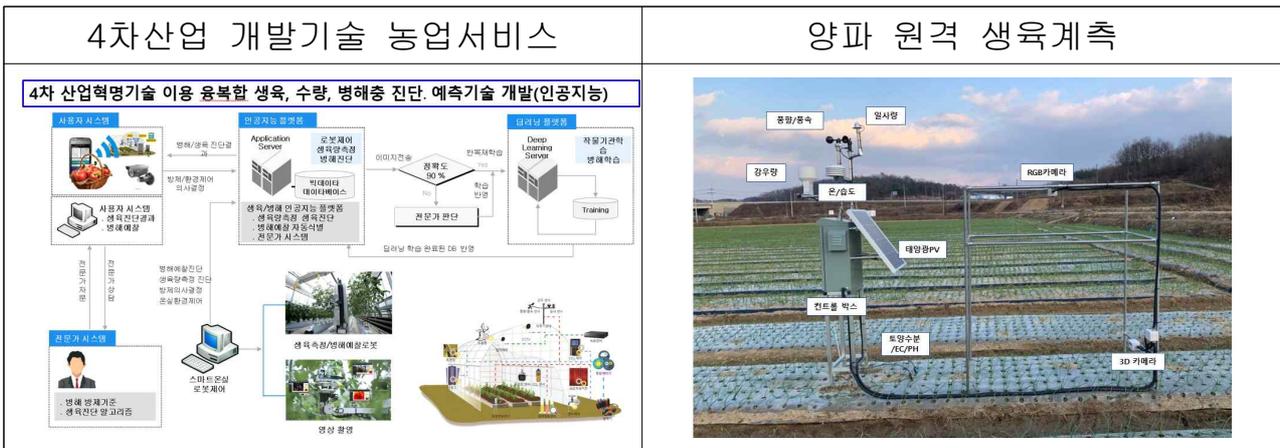
- 생산단지를 제외한 농촌의 고령화로 마을 기능이 붕괴되고 있어 생산단지와 농촌 마을을 연계한 농업·농촌 활성화 필요
- 스마트시티 생활 및 농업 생산단지 서비스를 하나의 유·무선 통신 공동체로 구축하여 통합서비스 제한요인 극복 및 청년 중심 농촌 활성화 시범 모델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년 ~ '22년 3년간
- 사업대상 : ① 농업기술원 일원 ② 나주 세지면 농업 생산단지(반경 3km)
- 사업비 : 6.5억원(도비 100%)
 - 국고 건의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농업 서비스 통합지원 실증 연구 목적
- 사업내용
 - 자가망 무선통신 시설 및 서버 구축
 - ① 본원과 시설단지 간 원거리 통신망 1회선(12km)
 - ② 무선 구역망 2개소 : 본원(1km 이내), 세지면(3km 이내)
 - 시범단지 실증연구 시설 설치
 - ① 무선 자가망 연계 단동형 스마트팜 : 10동
 - ② 무선 자가망 연계 노지 무선관수 시스템 구축 : 4식
 - ③ IoT 센서, 이미지 수집(생육, 병해충) 카메라 설치
 - 스마트 농업 관리 통합 플랫폼 설치(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 등)

□ 추진실적

-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채택('20. 5.) : 강진(2,450백만원)
 - 농장 맞춤형 생산성 향상 서비스(전남 농업기술원) 등 5개 사업
- 농업서비스 통신망(농업기술원 중심) 및 개발기술 농업 서비스 구축
- 양파 원격 생육 계측 실시



2 비대면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 대응 교육(인재개발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화상교육 시스템 도입 및 전환 필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운영 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ICT기반 비대면 원격강의 플랫폼 구축 및 연중 가동체계 마련
 - 감염병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합교육을 대체할 ICT기반 비대면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쉴 강의실 / 15곳)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관리가 중요한 상황으로 감염병 관련 과정 운영
 - (과정운영) 감염병 이해 및 예방
 - (과목편성) 장기과정(2과정) - 신규자과정, 종건리더양성과정
단기과정 / 2시간 이상 교과목 반영

□ 추진상황

- 쉴 강의실 비대면 원격강의 환경 구축(15실) : '21. 4.
 - PTZ카메라(동작추적카메라) 4대 설치, 화상카메라(11대), 구루미 플랫폼 구축
- 비대면 화상교육 시스템을 통한 교육 본격 운영 : '21. 4.
- 감염병 이해 및 예방 등 교육과정 운영 : '22. 1.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전환 시에도 ICT기반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중단 없는 교육 운영
- 감염병 과정(교과) 편성 운영으로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능력 향상

3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개발원 운영(인재개발원)

□ 추진배경

-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에서 새로운 개발원 시대 개막
-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도민 제일주의 공직가치관 실현

□ 주요내용

- (갤러리 운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규 모	20평(본관동 1층) / 그림 등 다양한 작품 전시
주요내용	2~3개월마다 작품 교체 전시(지역 젊은 작가 활용)

- (도서실 개방) 다양한 분야의 자료 대출 및 학습공간 제공

규 모	115평(본관동 3층) / 교양서적 등 3만권 도서 비치
주요내용	도민+교육생이 원하는 신규도서 비치 * 평일 09:00 ~ 18:00 개방

- (DVD 상영) 도민에게 DVD영화상영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장소/횟수	다산홀(대강당) / 월 1회(매주 마지막주 목요일)
주요내용	다시 보고 싶은 명작영화 상영(원 보유 중인 DVD상영)

□ 추진상황

- 갤러리 운영 : '21. 5. ~ 현재

- ▶ 개원 대비 전남문화상 수상작품 특별 전시
 - 1차 전시: 이지호 작가(신안, 서양화 10점), '21. 5. 20.~ 6. 30.
 - 2차 전시: 장안순 작가(순천, 서양화 13점), '21. 7. 1.~ 8. 31.
- ▶ 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작가 초대전
 - 3차 전시: 김충호 작가(강진, 수채화 17점), '21. 9. 1. ~ 10. 29.
 - 4차 전시: 권진용 작가(여수, 수채화유화 14점), '21. 11. 1. ~ 12. 31.
 - 5차 전시: 한은주 작가(강진, 한글서예 20점), '22. 1. 1. ~ 2. 28.

- 도서실 도민 개방('21년 108명 이용) : '21. 5. ~ 현재

- DVD 영화 상영('21년 2회 상영) : '21. 10. ~ 현재

□ 기대효과

- 도민 시설 개방 등 열린 개발원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할 학습문화 공간으로써 개발원 역할 수행

V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보수지급 부적정(주의, 통보)	39
② 건강검진 관련 복무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훈계, 시정) ·	47
③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중복 구입 등 예산 낭비(통보)	51
④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업무 소홀(시정)	56
⑤ 검수조서 허위작성 등으로 예산 부당 집행(징계, 시정, 주의)	59
⑥ 도 소유 특허기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64
⑦ ○○ ○○ ○○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68
⑧ 건설기술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71
⑨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주의)	74
⑩ 공유재산 관리 업무 부적정(시정)	85
⑪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89
⑫ 생활관 관리 부적정(주의)	93
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주의)	100
⑭ 교육훈련 운영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105
⑮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124
⑯ 강사비 수당 지급 및 수송차량 임차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통보)	136
⑰ 구내식당 위수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141
⑱ 인쇄물유인 등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151

전라남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보수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과수연구소, 자원경영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공무원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채용 공고별 전형 단계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보수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라남도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¹⁾(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예정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고를 통하여 규정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했다.

한편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별표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재배기술 개발 업무 등 36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4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1) 「전라남도 공무원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인사 및 복무 등의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 등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과수연구소)은 ○○군 ○○읍 ○○에 사는 ☆☆☆와 ‘○○○○○○사업’으로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완료되어 2019. 7. 31. 근무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으로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 ☆☆☆와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2019. 9. 30. 완료되자 2019. 10. 1.부터 2019. 11. 19.까지 ‘○○○○ ○○○○사업’, 2019. 11. 20.부터 2019. 12. 31.까지는 ‘○○○○ ○○○○사업’에 또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고를 통한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변경한다는 내부결재만을 통하여 다른 사업에 채용했던 기간제 근로자(동일인)를 당면 사업에 채용하는 등 [별표 2]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건의 개별사업, 5명에 대하여 새로운 공고를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다른 근로자에게는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농업기술원(과수연구소)은 ☆☆☆에게 당초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 ○○사업’으로 채용계약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 7. 31. 이 사업이 종료되자 ☆☆☆에게 2019. 10. 24. 근로계약 해지 통보하였고 퇴직금까지 지급 완료한 상태이며, 그 시기에는 ‘○○○○ ○○○○사업’에 채용되어 있는데도 다시 종료된 기존 사업인 ‘○○○○ ○○ 사업’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현황”과 같이 2019. 12. 2.부터 2019. 12. 5.까지 4일간 ☆☆☆에게 근무하게 하여 급여 299,56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현황

지급일자	수령자(피 계약자)		추가 근무기간	사업명	지급액 (원)	비 고
	소속	성명				
2019.12.26.	과수연구소	▲▲▲	2019.12.2.~ 2019.12.5. (4일)	○○○○ ○○	299,560	- 2019.7.31.사업종료 - 2019.10.24.근로계약 해지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당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대법원 판례²⁾를 참고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퇴직금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 등)은 [별표 3]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37명에게 퇴직금 90,531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야 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0,531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퇴직금 등 보수지급 업무를 추진 시 법령을 숙지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대법원(1995.7.11. 선고93다26168)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도록 선고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라남도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사업종료기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켜 채용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강검진 관련 복무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곤충잡업연구소, 농촌지원과, 농업교육과, 자원경영과)

- 훈 계 대 상 자
- 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②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③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소 ●●● ☆☆☆
 - ④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소 ●●● ☆☆☆
 - 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소 ●●● ☆☆☆
 - ⑥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소 ○○○ ☆☆☆
 - ⑦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소 ●●● ☆☆☆
 - ⑧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⑨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⑩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⑪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⑫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 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 ○○○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사유로 451회에 걸쳐 공가를 허가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

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공무직 포함)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복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로 처리하여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자원경영과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등 총 13명(17회)이 [별표] “공가 부당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명세”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자원경영과 ☆☆☆ 등 총 8명은 부당하게 공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연가로 대체하여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가로 그대로 인정하여 연가보상비 8명, 11회, 계 1,077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① 부당한 공가를 인정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연가보상비 11건, 107만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13명을 훈계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통보

제 목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중복 구입 등 예산 낭비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친환경농업연구소, 과수연구소, 축산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천만 원 이상 고가의 연구분석장비를 [표 1] “연구분석장비 구입 현황”과 같이 장비심의회를 거쳐 11대, 942,285천 원 구입하였다.

[표 1] 연구분석장비 구입 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 천 원)

연번	물품명	취득(구입)일	취득가액	관리부서	비고
계	11대		942,285		
1	다중가스검출기	2021.08.26	76,000	축산연구소	중복구입
2	다중가스검출기	2020.06.24	80,216	친환경농업연구소	중복구입
3	동결건조기(리오필라이저)	2021.09.08	66,392	과수연구소	중복구입
4	동결건조기(리오필라이저)	2020.06.30	84,550	축산연구소	중복구입
5	세포분석기	2021.07.27	80,905	과수연구소	
6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019.06.27	83,367	친환경농업연구소	중복구입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021.12.21	125,331	과수연구소	중복구입
8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	2021.07.14	62,850	축산연구소	
9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2021.11.08	131,746	축산연구소	
10	적외선분광기	2019.07.17	83,476	차산업연구소	
11	적외선카메라	2021.08.30	67,452	축산연구소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농업기술원은 [별표] “연구분석장비 물품 보유 명세(5천만 원 이상)”와 같이 디지털 육종 연구 및 선진 재배법 개발 등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

여 2022. 2. 18. 감사일 현재 27대, 2,408백만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표 2]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였다.

[표 2]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계약상대자	운행대수	비고
계	216,000	177,212			
2019	96,000	80,002	(유)○○○○	2대(45인승)	용역계약
2020	60,000	52,800	(유)○○○○	2대(45인승)	용역계약
2021	60,000	44,410	(유)○○○○	1대(45인승)	용역계약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고가의 연구분석장비 중복 구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비록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 용도가 중복되어 과다 보유 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동일한 용도의 연구분석장비는 다른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가의 연구분석장비인 다중가스검출기를 축산연구소와 친환경농업연구소가 각각 구입하였고, 동결건조기(리오필라이저)를 과수연구소와 축산연구소에서 각각 구입하였으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친환경농업연구소와 과수연구소가 각각 구입하는 등 동일 목적의 연구분석장비를 [별표] “연구분석장비 물품 보유 명세(5천만원 이상)”와 같이 연구소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중가스검출기 등 동일 품목의 5천만 원 이상 고가 연구분석장비 6대를 중복으로 취득하여 515,85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업기술원의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 예산 편성은 해마다 도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타 기관 기간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관이 2022. 2. 18. 감사일 현재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기관의 출퇴근용 버스 임차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 본청에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있으나, 농업기술원만이 유일하게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임차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이러한 교통편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청사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도 예산으로 임차하여 177,212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료를 예산에서 부담하게 하여 177,21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입장비 운용인력 관리, 사용시간, 유지비,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고가의 연구분석장비에 대한 중복구입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 임차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농촌지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농산업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시설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8억원(균특회계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내 2개 시설 4,550㎡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21년 5월에 ‘◆◆◆◆◆◆◆◆’을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한편 농업기술원은 2020. 12. 24. 「전라남도 ◆◆◆◆◆◆◆◆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5. 29. ◆◆◆◆◆◆◆◆을 준공하였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신고하고, 사무실이나 세미나실 등을 임대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할 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농촌지원과)은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대하여 [표] “◆◆◆◆◆◆◆◆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현황”과 같이 총 공사비 8,886백만 원²⁾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808백만원³⁾을 감사일인 2022. 2. 18. 현재까지 공제 신청도 환급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술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 ◆◆◆◆◆◆◆◆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시설비(매입액)			환급 예상액
		총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2019~2021년 (3년)	8,886	8,078	808	808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2) 총 사업비 118억원에서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시설비만 포함한 금액임

3) 정확한 환급액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협조를 얻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금액 확정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리모델링 조성공사의
매입 부가가치세 약 8억 783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공제 또는 환급 청구 하시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징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검수조서 허위작성 등으로 예산 부당 집행

관계기관(부서)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

징 계 대 상 자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지방○○○연구관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1.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 부당 집행

가. 업무개요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지방○○○연구관 ☆☆☆은 2019. 10. 29.부터 2019. 11. 29.까지 국내 차 산업 활성화와 홍차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차 수출용 제품 포장재¹⁾를 [표 1]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현황”과 같이 ●●●(주)²⁾에 사무관리비 예산 4,600,000원으로 제작 의뢰하였다.

[표 1]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현황

(단위 : 개, 원)

물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3건	6,000		4,600,000	20천원 절삭 (VAT 포함)
그린티 패키지 박스	8.5 × 6 × 12.8cm	2,000	770	1,540,000	
블랙티 패키지 박스	8.5 × 6 × 12.8cm	2,000	770	1,540,000	
허브티 패키지 박스	8.5 × 6 × 12.8cm	2,000	770	1,540,000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싱가포르 ☞☞☞☞☞ 솥 입점을 위한 맞춤형 포장재 박스 제작 의뢰

2)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수출 세일즈 에이전트 업체로서 차산업연구소와 기술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2018.11.23.)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회계법」 제5조 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일상경비로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차산업연구소는 ‘싱가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검수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은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출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포장재 박스가 연내 납품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위 사업의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9. 12. 19.에 대금 4,600,000원을 집행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년 2개월여가 지난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도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는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작업체인 ●●●(주)에 대금 4,600,000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후 반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박스 사업 부당 집행

가. 업무개요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지방○○○연구관 ☆☆☆은 2021. 8. 19.부터 2021. 9.

15.까지 기간으로 자체 연구개발한 ‘스틱형 녹차믹스(●●●●●●)’의 중국시장 수출 및 소비자 선호도조사를 목적으로 [표 2]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현황”과 같이 □□□□법인 □□□□에 재료비 예산 9,720,000원으로 스틱형 녹차믹스를 구입하였다.

[표 2]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현황

(단위 : 원)

물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수출용 ●●●●●●	각	3,240	3,000	9,720,000	1각 12개, 1박스 24각, 1팔레트 45박스 (VAT 포함)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1항내지 4항에 따르면 지출의 절차는 지출원인행위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고,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과 포장재 박스 제작·구입 사업’을 지출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검수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차산업연구소)은 중국에 스틱형 녹차믹스의 수출 및 선호도 조사사업이 2021. 4. 28. ‘2021년 연구개발 신기술 현장실증사업 및 현안과제’로 선정·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구두로만 계약과 발주를 한 채 스틱형 녹차 믹스(●●●●●●)를 3,240각을 납품받아 2021. 8. 18.에 제품의 중국 수출 상차식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2021. 8. 19.부터 2021. 9. 15. 기간동안

물품 계약, 납품, 검수 등을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계약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대금 9,720,000원을 2021. 9. 15.에 집행하였다.

더욱이, 농업기술원은 물품 거래처인 □□□□법인 □□□□(대표 ●●●●)이 수출용 포장재 박스의 유통기한 표기 오류로 인한 포장재 박스 추가 제작이 필요하게 되자 □□□□에서 부담하지 않고 이를 차산업연구소에서 추가 부담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2021. 9. 14.부터 2021. 9. 23.까지 기간으로 [표 3] “스티크형 녹차믹스 포장재 박스 제작 현황”과 같이 ●●●●(주)에 시험연구비 예산 2,993,760원으로 ◎◎라떼 포장재를 제작 의뢰하고, 2021. 9. 23. 집행하였다.

[표 3] 스틱형 녹차믹스(●●●●●●) 포장재 박스 제작 현황

(단위 : 개, 원)

물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포장재(소)	각	3,240	924	2,993,760	VAT 포함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업기술원은 물품구입 계약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였고, 스틱형 녹차믹스 납품 거래처인 □□□□에서 부담하여야 할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 2,993,76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싱가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제작 사업 부당 집행」과 관련하여 전남의 차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에서 생산된 차의 싱가포르 수출을 목표로 수출용 차제품과 포장재 디자인을 제작하면서 바이어와 최종 수출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수출이 지연되었으며, 그로인해 차제품과 디자인 제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포장재 박스 제작비를 먼저 집행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티형 녹차믹스 수출용 포장박스 구입 사업 부당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임 소장과 □□□□간의 불화로 인한 업무추진이 지연되었고, 수출 날짜에 임박하여 적극적·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완료된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의 실수로 인한 추가 포장재 제작에 있어서도 □□□□의 예산부족 호소에 따라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싱가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지방○○○연구원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① 납품하지 않은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사업비 4,600천원을 회수하거나 납품을 받도록 하시고,(시정)
- ②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 및 포장재 제작사업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싱가포르 수출용 차상품 포장재 박스 제작사업과 중국 수출용 스틱형 녹차믹스 구입과 포장박스 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한 지방○○○연구원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징계)

전라남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도 소유 특허기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

내 용

1. 도 소유 특허기술 실시료 부과 부적정

가.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기술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표 1]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¹⁾ 계약 현황”과 같이 (주)○○○ 등 48개 업체와 59건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별	실시권자	계약건수	계약기간	실시료
계	48개 업체	59	3년간	203,807,000
2019	주식회사 ○○○ 등 12개 업체	12	2019년 ~ 2021년	54,197,000
2020	(주)○○○ 등 13개 업체	19	2020년 ~ 2022년	85,557,600
2021	(주)○○○ 등 23개 업체	28	2021년 ~ 2023년	64,052,400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라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도유평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고, 도유평특허권의 처분은 유상

1)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르고,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실시권자가 함께 체결한 「도유 특허기술 통상 실시권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실시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료 납부 전에는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권자로 하여금 실시료를 납부한 후 특허기술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유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59건 중에 2019년 1건, 2020년 7건, 합계 8건에 대하여 [표 2] “실시료 납부 지연 현황”과 같이 짧게는 13일, 길게는 119일 지연시켜 실시료를 납부 받았다.

[표 2] 실시료 납부 지연 현황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계약체결일	부과일	수납일	부과금액	비고
	8개 업체				54,657,600	
1	○○○○○○(주)	2019. 3. 11.	2019. 6. 25.	2019. 7. 8.	900,000	
2	(주)○○○○○○	2020. 6. 9.	2020. 6. 18.	2020. 6. 23.	20,235,600	
3	○○○○○○	2020. 6. 9.	2020. 6. 18.	2020. 6. 30.	20,148,000	
4	(주)○○○○○○	2020. 6. 9.	2020. 6. 18.	2020. 6. 22.	1,224,000	
5	○○○○○○	2020. 6. 9.	2020. 6. 18.	2020. 6. 29.	1,350,000	
6	(주)○○○○○○	2020. 6. 9.	2020. 6. 18.	2020. 6. 22.	2,850,000	
7	○○○○○○(주)	2020. 6. 9.	2020. 6. 18.	2020. 6. 30.	5,250,000	
8	○○○○○○	2020. 6. 9.	2020. 6. 18.	2020. 6. 30.	2,700,000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실시료가 체납되어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시권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어 제품생산 및 사업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2. 통상실시권 계약만료 정산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서」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실시권자는 실시계약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생산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농업기술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정산에 의하여 추가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특허기술 실시권자에게 실시상황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산하고, 추가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추가세입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3] “연도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실시권자 현황”과 같이 특허기술 계약기간이 만료된 34개 실시권자에게 실시상황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다.

[표 3] 연도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실시권자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별	실시권자	특허기술	실시료
계	34개 업체	33건	267,403,500
2019	(주)○○○○○○ 등 10 업체	인공수분용 현탁액 등 12	81,570,500
2020	○○○○○○ 등 4개 업체	발효율금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식품조성물 등 2	86,300,000
2021	○○○○○○(주) 등 20개 업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 등 19	99,533,000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실시료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①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이 만료된 34건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추가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추가 수입조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도 소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전까지 실시료를 부과하여 사전 납부하도록 하고, 특허기술 계약이 만료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 10월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등을 위하여 [표 1] “□□□□ 신축공사 등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 신축공사 등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계	4건	2,145,366	1,707,418	437,948			
○○○○○○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	교육연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1동, 1,088㎡	765,327	640,601	124,726	2021.11.26. ~ 2022.03.25.	☆☆☆☆(주) (●●●)	감액
○○○○○○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	교육연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1동, 1,189㎡	699,885	568,990	130,895	2021.11.30. ~ 2022.03.29.	☆☆☆☆(주) (●●●)	감액
○○○○○○ 조성공사	식물식재, 조형물 구조물 설치 등 1식	431,744	310,948	120,796	2020.05.27. ~ 2020.11.02.	(주)☆☆☆☆ (●●●)	회수
○○○○○○ 공사	창고시설 신축 179.23㎡ 등	248,410	186,879	61,531	2019.10.22. ~ 2019.12.27.	☆☆☆☆ 주식회사 (●●●)	회수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 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2022. 2. 18. 감사일 현재 [표 2] “□□□ □ 신축공사 등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2,037천원을 회수 및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 신축공사 등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163,495		141,458	△ 22,037
□□□□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			25,553		23,087	△ 2,466
1	시항타 결과 반영으로 파일 항타 길이 변경	570m	25,553	515m	23,087	△ 2,466
○○○○○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			52,585		41,675	△ 10,910
1	시항타 결과 반영으로 파일 항타 길이 변경	480m	21,340	432m	18,386	△ 2,954
2	순성토 운반거리 및 운반장비 변경 (덤프트럭 15ton → 24ton)	10km	31,245	6.5km	23,289	△ 7,956
○○○○○조성공사			17,617		10,989	△ 6,628
1	녹지 및 포장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660m	17,617	660m	10,989	△ 6,628
○○○○○ 공사			67,740		65,707	△ 2,033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시 진동롤러, 물탱크 미사용으로 정산	426㎡	67,740	426㎡	65,707	△ 2,033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22,037천원의 공사비가 회수 및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22,037,000원을 감액 및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 9월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3건 및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실시설계 용역 2건을 시행하였다.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¹⁾”에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라남도 또는 다른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의 평가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재 요청” 공문을 접수받았고 같은 내용을 2015년부터 총 4회²⁾에 걸쳐 통보하였다.

1)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14. 5. 23. 이후 용역실적은 이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만 인정토록 하고 있음

2) 지역계획과-5984(2015. 4. 20.), 지역계획과-5301(2017. 3. 13.), 지역계획과-6548(2017. 3. 29.), 지역계획과-4396(2018. 3. 7.)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과 업무중복도 평가업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2022. 2. 18. 감사일 현재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에 [표 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건설기술용역 3건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표 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업체	등록 경과일수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계	3개 용역	250,405				
1	○○○○○○○ 실시설계 용역	140,985	2020.02.28. ~2021.07.26.	주식회사 ○○○○ (●●●)	2021.08.05.	197일 경과
2	○○○○○○○설계 용역	21,635	2019.09.06. ~2019.10.31.	○○○○○○○(주) (●●●)	2019.11.10.	831일 경과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7,785	2021.02.02. ~2021.06.03.	○○○○○○○ (●●●)	2021.06.13.	250일 경과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가 적기에 등재되지 못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활용하지 못하여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격자 선정 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지반 조사결과 전산화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 46조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산화³⁾ 하도록 되어 있다.

3)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 : 국토교통부는 전국토의 지반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 활용을 위하여 2003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반정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에 1개월 이내 전산화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은 2022. 2. 18. 감사일 현재 [표 2]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지반조사를 수반하는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반조사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전산화하지 않고 있다.

[표 2]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업체	지반조사량	등록 경과일수 (준공일 등록)	
계	2개 용역	102,468					
1	□□□□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54,882	2021.05.03. ~2021.08.17.	○○○○○○○ (●●●)	시추조사 1공	2021.06.09.	246일 경과
2	○○○○○○○ 실시설계용역	47,586	2021.05.03. ~2021.08.17.	○○○○○○○ (●●●)	시추조사 1공	2021.06.09.	246일 경과

제출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시추를 통해 조사된 지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정보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한 건설기술용역 결과를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및 “지반조사용역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잡업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촌지원과, 농업교육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등을 위하여 [표 1]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같이 84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128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28	8,416	42	3,372	41	2,450	45	2,594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에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10개 부서)은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하자검사 대상 128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304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122회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종검사 대상 48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종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그 결과 하자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잡업연구소, 축산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농업기술원은 2019. 1월부터 2022. 2월까지 소속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재해 등에 대비하고 있다.

2. 관사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제52조, 제55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사, 그밖의 관사 등은 제3급 관사로 구분되며, 제3급 관사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소속공무원이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에 따르면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관사의 사용자는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사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사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과수연구소)은 2019년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과수연구소 내 시설관리사에 대하여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

또한 [표 1] “과수연구소 관리사 사용 내역”과 같이 소속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관리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허가나 허가취소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하게 하였으며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사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과수연구소 관리사 사용 내역

구분	사용기간	사용자
1호 실	2019. 01. 01. ~ 2019. 06. 30.	◎◎◎ ★★★
	2020. 11. 09. ~ 현재	○○○ ☆☆☆
	2021. 01. 03. ~ 현재	◎◎◎ ★★★
2호 실	2019. 02. 01. ~ 현재	○○○ ☆☆☆
	2019. 01. 01. ~ 2019. 07. 19.	◎◎◎ ★★★
	2019. 10. 21. ~ 2020. 01. 06.	○○○ ☆☆☆
	2020. 08. 01. ~ 2021. 02. 11.	◎◎◎ ★★★
	2022. 02. 14. ~ 현재	○○○ ☆☆☆
3호 실	2019. 01. 01. ~ 2020. 04. 01.	◎◎◎ ★★★
	2019. 01. 01. ~ 2020. 04. 01.	○○○ ☆☆☆
	2020. 04. 01. ~ 2020. 07. 19.	◎◎◎ ★★★
	2020. 08. 01. ~ 현재	○○○ ☆☆☆
	2022. 02. 14. ~ 현재	◎◎◎ ★★★
4호 실	2019. 01. 01. ~ 2020. 02. 15.	○○○ ☆☆☆
	2019. 01. 01. ~ 2020. 04. 30.	◎◎◎ ★★★
	2021. 01. 03. ~ 2022. 02. 13.	○○○ ☆☆☆
	2022. 02. 14. ~ 현재	◎◎◎ ★★★
	2022. 02. 14. ~ 현재	○○○ ☆☆☆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용재산 공제 가입 노력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및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건물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1억원 이상인 공작물, 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곤충잡업연구소)은 2019년 꿀벌 사육사를 150㎡ 신축하고도 공제에 미가입 하였고, 축산연구소는 2019년에 축사 90㎡를 증축하고도 공제 가입시 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등 농업기술원(곤충잡업연구소 등 5개 부서)은 2019. 1월부터 2022. 2월까지 [표 2] “신축 및 증축건축물 공제 가입 현황”와 같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하였고, 증축한 3동의 건물에 대하여 증축한 면적을 가입한 공제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2] 신축 및 증축 건축물 공제 가입 명세

연번	실과	시설용도	연도	현황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1	곤충잡업연구소	꿀벌 사육사	2019	신축(150㎡)	미가입
2	차산업연구소	연구소	2021	증축(379.26㎡)	미가입
3	친환경농업연구소	연구소	2021	신축 946 ㎡ (철골조 498, 온실 224, 하우스 224)	미가입
4	축산연구소	축사	2019	증축(90㎡)	공제가입(면적변경안함)
5	축산연구소	퇴비장	2020	증축(170㎡)	공제가입(면적변경안함)
6	친환경농업연구소	폐기물보관 창고	2021	증축(12 ㎡)	공제가입(면적변경안함)
7	식량작물연구소	시험포장 농업인교육장	2019	신축(179.23㎡)	공제가입
8	과수연구소	시험연구조사	2020	신축(111㎡)	공제가입
9	원예연구소	치유농업 연구 온실	2019	신축(686㎡)	공제가입
10	곤충잡업연구소	양봉관리시설 창고	2020	신축(222㎡)	공제가입
11	차산업연구소	연구소	2019	신축(490.5㎡)	공제가입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및 기구 보험가입 현황”와 같이 식량작물연구소에서 2019년에 구입한 콤바인과 원예연구소에 2020년에 구입한 송풍기는 가격이 1억원이 넘는 기계인데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표 3]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및 기구 보험가입 현황

(단위 : 원)

연번	실과	구매년도	품목	구매비용	보험 가입 유무
1	식량작물연구소	2019	콤바인	187,072	미가입
2	원예연구소	2020	송풍기	184,267	미가입
3	과수연구소	2021~2022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25,331	가입
4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217,800	가입
5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217,800	가입
6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217,800	가입
7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143,000	가입
8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143,000	가입
9	농촌지원과	2021	제분기	143,000	가입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미가입한 신축 및 증축 6건 건축물과 1억원 이상 2건 물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농업기술원은 2019. 1월부터 2022. 2월까지 지출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지출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6개 부서)은 [표] “농업기술원 포인트 현황”와 같이 2019. 1월부터 2022. 2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총 13,892,379원에 대하여 5,672,980원만 세입조치 하였고, 1,660,484원은 포인트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며, 6,558,915원은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세

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농업기술원 포인트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은행명	계좌번호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멸포인트	잔여포인트
계		0000	13,892,379	5,672,980	1,660,484	6,558,915
운영지원과	광주은행	000-000-000	343,243	270,000	48,900	24,343
운영지원과(유류)	농협	000-000-000-000	5,401,530	5,401,530	0	0
친환경농업연구소	광주은행	000-000-00000	3,646,985	0	15,720	3,631,265
식량작물연구소	농협	000-0000-0000-00	87,019	0	82,353	4,666
		000-0000-0000-00				
차산업연구소	광주은행	000-000-0000000	1,444,470	0	0	1,444,470
과수연구소	농협	000-000-000	627,488	0	627,488	0
곤충잡업연구소	농협	000-000-000	1,455	1,450	0	5
자원경영과	농협	000-000-000-000	2,340,189	0	886,023	1,454,166

자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포인트 1,660,484원을 세입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 포인트 6,558,915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포인트가 소멸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법인카드 이용대금 연체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법인카드 사용 후 이용대금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품의→원인행위→지출)에 따라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농업기술원(운영지원과 등 9개 부서)은 [별표] “농업기술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명세”과 같이 2019. 1월부터 2022. 2월까지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6일까지 이용대금을 지연 입금하여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었고 운영지원과

의 연체원금 15,312,417원은 2022. 2. 8. 연체되어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입금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정상 입금조치 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연체료 총 32,807원을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연체에 따라 카드사용이 금지되어 해당 카드의 이용을 못하게 되는 등 법인카드 이용대금 회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 ①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세입조치 하지 않은 포인트 6,558,915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라고,(시정)
- ②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등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 따라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생활관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길로 이전한 2021. 4월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과 같이 대강당·세미나실·강의실 등 강의시설, 교육생 합숙시설인 생활관 등 인재개발원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시설명	실수	수용인원(명)	세부 시설
강의시설	14	1,182	대강당, 세미나실, U형 강의실, 전산강의실 등
생활관	95	157	사감실(1실), 1인실(32실), 2인실(60실), 장애인실(2실)
편의시설	31	496	도서관, 휴게실, 취미활동실, 의무실, 식당, 매점 등
사무실	5	56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기타	3	246	갤러리, 방송실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청사, 관사, 건설 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에 따르면 공용물(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이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물(재산)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원 공무원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휴일에 무상 대여하는 것 등을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한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사용료 징수 조례”라고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원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생활관 등 인재개발원 시설을 교육훈련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공무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조례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면하여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인재개발원의 생활관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이 공무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2021. 3. 22. 인재개발원 생활관 401호 등 7실을 [표 2]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생활관 사용 대상자 및 숙소 배정 현황”과 같이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용료를 사용료의 30%를 감면¹⁾한 70%를 납부하도록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생활관 운영계획²⁾」을 수립한 후,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길로 이전한 2021. 4월부터 같은 해 6월³⁾까지 교육지원과 ○○○ 등 소속 직원 13명에게 [표 3]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생활관 사용 및 감면 현황” 및 [별표]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생활관 사용료 월별 감면액 명세”와 같이 1인 최대 171,000원에서 최소 112,000원까지 총 사용료 7,005,000원의 30%에 해당되는 2,101,500원⁴⁾을 감면받도록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표 2]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생활관 숙소 배정 현황

연번	숙소	부서	직급(직위)	성명	연번	숙소	부서	직급(직위)	성명
계	7실			14명	7	404호	교육운영과	●●●	○○○
					8		교육지원과	●●●	○○○
1	401호	교육지원과	●●●	○○○	9	425호	교육운영과	●●●	○○○
2		교육운영과	●●●	○○○	10		교육운영과	●●●	○○○
3	402호	교육지원과	●●●	○○○	11	203호	교육운영과	●●●	○○○
4		교육운영과	●●●	○○○	12		교육운영과	●●●	○○○
5	403호	교육지원과	●●●	○○○	13	204호	교육운영과	●●●	○○○
6		교육지원과	●●●	○○○	14		교육운영과	●●●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근거 :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3항

(감면사유) ① 광주에서 강진으로 이전에 따른 직원 출퇴근 불편 및 주거 불안정 해소 ② 교육생 및 강사 등은 교육여비에서 숙박비가 지원되지만 직원들은 관사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음 ③ 강진 새 청사 주변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직원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 필요

2)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1012(2021. 3. 22.),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생활관 운영계획」

결재 : 주무관(○○○)-교육지원팀장(○○○)-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원장(○○○)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385(2021. 7. 16.), 호남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전라남도인재개발원) 지정 알림(지정일 2021. 7. 17.)

- 2021. 7월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숙소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4) (산출근거) 시설사용료 7,005,000원(467일×15,000원)×30%

[표 3]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생활관 사용 및 감면 현황(2021.4월~6월)

(단위 : 일, 원)

연번	부서	작급	성명	사용일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A)	납부액(B)	감면액(A-B)
계			13명	467	7,005,000	4,903,500	2,101,500
1	교육지원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2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3	교육지원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4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5	교육지원과	●●●	○○○	30	450,000	315,000	135,000
6	교육지원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7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8	교육지원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9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10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11	교육운영과	●●●	○○○	25	375,000	262,500	112,500
12	교육운영과	●●●	○○○	38	570,000	399,000	171,000
13	교육운영과	●●●	○○○	32	480,000	336,000	144,000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건립된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의 생활관이 사적 용도인 직원 숙소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인재개발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설물(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이전할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관이 비어 있었으며 강진군 소재 월세·전세든 집이 없었고 광주에서 1시간 30여분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청사 이전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등을 볼 때 복지 차원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제3항의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생활관 사용료 30%를 감면 조항을 적용하

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이전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등을 볼 때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을 자체 마련한 「생활관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료 30%를 감면하면서 생활관을 사용하도록 한 점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공무원은 청사, 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에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물(재산)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원 공무원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한 예시로 명시한 점 및 2019. 9. 24.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면제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금품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혜·특권 유발하는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하였고 면제대상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인재개발원이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을 사용료 30%를 감면하면서 생활관을 사용하도록 한 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를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생활관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조례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하여 징수하고, 공용물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훈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회의의 고지 및 직무수행 부적합 위원 재위촉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육훈련 수요자 등 8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전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대학교 ○○○○학과 교수) - ○○○○ (○○○○○○대 ○○○○교수) - ○○○○ (○○○대학교 ○○○○학과 교수) - ○○○○ (○○○대학교 ○○○○학과 교수) - ○○○○ (○○○○○○○○ 교수) - ○○○○ (○○○대학교 ○○○○학과 교수) - ○○○○ (○○○군 ○○○○과 ○○○○팀장) - ○○○○ (○○○군 ○○○○과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안건 통지 - 회의자료 배부 (메일 발송) 	-
------	---	---	--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교육훈련 심의(위촉)위원 참석 현황

구분	2017.08.22. 위촉		2018		2019.08.21. 위촉		2020		2021.08.21. 위촉	
	위원명	참석여부	위원명	참석여부	위원명	참석여부	위원명	참석여부	위원명	참석여부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안) 검토가 되지 않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교육위원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⁵⁾’,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⁶⁾’ 7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는 2019년도는 70천원, 2020년도는 10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2시간 이내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 2019년은 70천원, 2020년은 1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2시간 이내)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 2019년은 70천원, 2020년은 1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2019~2020)”와 같이 이성주 등 9명에게 300,000원의 참석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

5)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기준액(2019년)

구 분		일반위원회	사이버위원회	비 고
금 액	2시간 이내	70천원	50천원	
	2시간 초과시	30천원	20천원	1일 1회에 한함

6) 기준액(2020년)

구 분		일반위원회	사이버위원회	비 고
금 액	2시간 이내	100천원	5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	20천원	1일 1회에 한함

[표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2019~2020)

(단위 : 원)

연번	위원회 개최일시	위원명	수당지급일	참석수당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 내용
합계		9명		1,080,000	780,000	300,000
1	2019.11.27. 14:00~16:00	○○○	2019.12.03.	120,000	70,000	50,000
2	2019.11.27. 14:00~16:00	○○○	2019.12.03.	120,000	70,000	50,000
3	2019.11.27. 14:00~16:00	○○○	2019.12.03.	120,000	70,000	50,000
4	2019.11.27. 14:00~16:00	○○○	2019.12.03.	120,000	70,000	50,000
5	2020.12.08. 15:00~17:00	○○○	2020.12.10.	120,000	100,000	20,000
6	2020.12.08. 15:00~17:00	○○○	2020.12.10.	120,000	100,000	20,000
7	2020.12.08. 15:00~17:00	○○○	2020.12.10.	120,000	100,000	20,000
8	2020.12.08.15:00~17:00	○○○	2020.12.10.	120,000	100,000	20,000
9	2020.12.08. 15:00~17:00	○○○	2020.12.10.	120,000	100,000	20,000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향후 위원 참석요청 및 안건통지 등 업무를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회의고지 및 회의자료 배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위촉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교육훈련 운영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 교육지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도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 해마다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교육훈련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의 장은 소속 지방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 과정의 설치계획,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 대상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 대상 선발계획, 교재편찬 계획 및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할 때는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 대상 선발계획, 교재편찬 계획 및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였는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면서 교재편찬 계획은 누락하였고 교육훈련수요조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였으나 매년 추진 중인 집합교육의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교육훈련계획을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교재편찬 계획 및 매년 추진 중인 집합교육의 수요조사가 누락된 ‘교육훈련계획(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부적정하게 부의하였다.

그리고 2021. 4. 27.부터 같은해 4. 30.까지 2021년 제2기 공무원 행정능력향상 교육 신청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교육인원 최소인원인 30명에 미달하여 2021. 4. 22.에 폐강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부실한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소홀하게 개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중견리더양성과정 현장학습 평가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표 1] “중견리더양성과정 평가 배점 현황(2019년~2021년)”과 같이 현장학습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중견리더양성과정 평가 배점 현황(2019년~2021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자
계	100		
학습평가	30	• (객관식) 행정법실무 15점 민법실무 15점	연구평가팀
		• 자격증취득 가점 2점	과정장
실기평가	10	• 정보화평가 5점 • 외국어평가 5점	담당강사
정책과제평가 (25)	5	• 개인별정책과제(입교시제출)	과정장
	20	• 연수팀별정책과제발표(PPT)	연구평가팀 심사위원
현장학습평가	10	• 팀별보고서(국내·해외사례조사결과)제출	과정장
개인연구과제평가	10	• 개인별연구과제보고서제출	과정장
근태평가	10	• 교육생수칙규정에의한평가	과정장
독후감평가	5	• 개인별독후감제출(지정도서)	과정장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국내·외 현장학습 후에는 교육생들에게 팀별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학습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중견리더 양성과정 현장학습 현황(2019년~2020년)”과 같이 교육생들의 국내·외 현장학습 후에 현장학습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에도 미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중견리더양성과정 현장학습 현황(2019년~2020년)

연도	기수	교육기간	팀명	현장학습	부적정 업무내용
2019	27	2019.07.01. ~12.27.	♣♣♣♣	• (국외) 미국, 쿠바, 멕시코 • (국내) 부산, 거제, 통영	현장학습 미평가 및 결과에 대한 다음해 교육훈련계획 미반영
			♣♣♣ ♣♣	• (국외) 캐나다, 미국 • (국내) 남원 무주, 광명, 서울	
			♣♣♣♣ ♣♣♣♣	• (국외) 미국, 캐나다 • (국내) 금산, 서울, 태안	
			♣♣♣♣♣♣♣♣	• (국외) 프랑스, 스페인 • (국내) 순천, 부산	
2020	28	2020.01.02. ~06.26.	♣♣♣♣	• (국내) 제주도, 마라도	
			♣♣♣♣ ♣♣	• (국내) 가평, 원주, 평창	
			♣♣♣♣♣♣♣♣	• (국내) 제주도	
			♣♣♣♣♣♣♣♣	• (국내) 제주도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교육생 식대정산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 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식사 값 및 공동 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1)’ 제1조에 따르면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갑’의 교육생 급식 대금은 해당 부서(교육운영과)와 협의하여 정산하고 장기교육 시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장(‘갑’)과 ♣♣♣♣♣♣♣♣주식회사(‘을’)의 운영계약 체결(계약기간 : 2018.01.01.~교육원 강진군 이전 시까지)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갑’)과 주식회사♣♣♣♣♣(‘을’)의 운영계약 체결(계약기간 : 2021.04.05.~2023.04.04.까지)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급식 대금은 교육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교육 종료 시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와 정산하여 교육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교육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식비 납부 안내에 따라 식비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후 교육 취소 등의 사유로 식비 환불 건이 발생하였는데도 [표 3] “교육생 식비 미환불 현황”과 같이 2020. 04. 21.부터 2021. 12. 03.까지 ◎◎◎ 등 17명에게 432,000원을 환불하지 않아 식대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3] 교육생 식비 미환불 현황(2019~2021)

(단위 : 원)

연번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생	미환불식비	발생사유	거래처
합계			17명	432,000		
1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4.21.~04.24.	◎◎◎	18,000	교육취소	♣♣♣♣♣♣
2	예산회계실무과정	2020.04.20.~04.22.	◎◎◎	13,500	"	"
3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이해	2020.07.08.~07.10.	◎◎◎	13,500	"	"
4	행정법과 법제실무과정	2020.07.06.~07.10.	◎◎◎	22,500	"	"
5	행정법과 법제실무과정	2020.07.06.~07.10.	◎◎◎	22,500	"	"
6	행정법과 법제실무과정	2020.07.06.~07.10.	◎◎◎	22,500	"	"
7	파워포인트 활용과정	2020.07.07.~07.10.	◎◎◎	18,000	"	"
8	파워포인트 활용과정	2020.07.07.~07.10.	◎◎◎	18,000	"	"
9	행정법과 법제실무과정	2020.07.06.~07.10.	◎◎◎	22,500	"	"
10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8.25.~08.28.	◎◎◎	18,000	"	"
11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8.25.~08.28.	◎◎◎	18,000	"	"
12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8.25.~08.28.	◎◎◎	18,000	"	"
13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8.25.~08.28.	◎◎◎	18,000	"	"
14	소셜미디어 활용과정	2020.08.25.~08.28.	◎◎◎	18,000	"	"
15	엑셀 활용과정	2020.09.01.~09.04.	◎◎◎	18,000	"	"
16	행정법과 법제실무과정	2020.12.14.~12.18.	◎◎◎	22,500	비대면	"
17	숲속의 치유과정	2021.12.01.~12.03.	◎◎◎	130,500	과입금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17명의 교육생에게 432,000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5. 교육생 여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VII.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별표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합숙의 경우는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교육훈련 기관으로 비합숙 교육생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고 운임·일비·식비²⁾를 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는 기숙사 시설인 행복관을 운영하여 비합숙 교육생의 경우에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임·일비·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 “교육훈련 여비 지급 부적정 명세”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한편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생 합숙시설 ‘행복관’은 2021. 07. 17.부터 호남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³⁾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운임 :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일비 : 1일당 20,000원

식대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상의 식비 20,000원

3)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385(2021.07.16.)

그로 인하여 341명 교육생에게 19,277,400원의 교육비를 과다지급하여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미정산된 식대 432,000원은 정산하시고 과지급된 교육 여비 19,277,40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교육훈련계획에 교육수요 조사결과, 교재편찬 계획이 반영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현장학습 평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훈 계 대 상 자 ① 전라남도 ○○○○국 ○○○○과 지방○○사무관 ○○○
(前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② 전라남도 ○○○○국 ○○○○과 지방○○주사 ○○○
(前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2015. 12. 17.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를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 40필지 78,150㎡(군유지 23필지 78,150㎡, 사유지 17필지 31,751㎡)로 확정하고,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신청사 이전사업(이하 “신청사 이전사업”이라 한다) 총사업비 478억원(건축비 377, 부지매입 59, 교육장비 등 42)을 투입하여,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19. 1. 16.부터 2021. 1. 14.까지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9. 3. 21.부터 2020. 1. 15.까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잔여지 매수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를 판단할 때에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아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여부 결정 시 판단 참고기준인 「토지수용 업무편람 2019년」 제5장-4-(2)에 수록된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기준(이하 “위 잔여지 보상 판단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답·과수원과 같은 토지는 ① 잔여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5m 이하 좁고 길게 남아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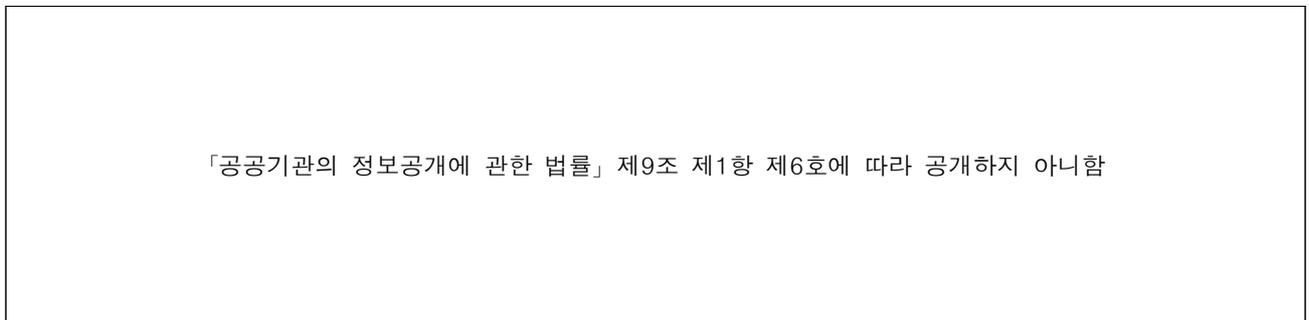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잔여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잔여지 면적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지 여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보상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토지소유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여 재결 결정에 따라 잔여지 매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0○○. ○. ○○. ○○○○시 ○○ ○○로

○○-○○에 거주하는 ○○○이 가옥이 편입되어 농지를 관리할 수 없는 등 경제성이 적다는 사유로 사업부지에 기 편입된 4개 필지에 연결된 잔여지 ○○군 ○○면 ○○리 ○○○-○¹⁾ 357㎡ 매수 요청에 대해, 해당 잔여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보상 판단기준 ① 잔여 면적이 보상대상 기준 330㎡보다 넓은 357㎡이고, ②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남았으나 농지로서 폭이 보상대상 기준 5m보다 넓은 6.5m 이상으로 농기계의 진입 회전에 문제가 없고, ③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잔여지에 진·출입 또는 용·배수 차단이 없는 등 잔여지 보상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토지 편입으로 종래 이용목적인 현저히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표 2] "편입토지 및 잔여지 현황"과 같이 잔여지 매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1] 인재개발원 사업부지와 잔여지의 지적도 및 현재 관리상태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1) 면적은 357㎡ 이고, 이용현황은 잔여지 매수 결정 당시 조경수 먼나무 164주가 식재 되어 있었음

[표 2] 편입토지 및 잔여지 현황

연번	소재지			면적 (㎡)	소유자	편입 여부	보상금액(천원)				지장물 내역
	군·면·리	지번	지목				계	토지	영농	지장물	
				6,874			894,611	365,817	12,378	516,416	
1	전라남도 충남군 충남면 충남리	○○○○-○	답	2,383	★★★ ♣♣♣ ☞☞☞	여	262,939	118,077	6,362	138,500	조경수
2	"	○○○○	전	436	"	여	161,267	21,603	1,164	138,500	조경수
3	"	○○○○	전	1,438	"	여	204,963	62,624	3,839	138,500	조경수
4	"	○○○○	대	2,260	"	여	197,847	145,431	-	52,416	가옥
5	"	○○○○-○	답	357	"	잔여지	67,595	18,082	1,013	48,500	조경수

제출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토지보상법」 상 잔여지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지를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67,595천원 보상금액을 지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수한 잔여지 매수대금만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

3. 토지 보상업무의 위탁기관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실적이 있고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2017. 3. 20.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대상 부지의 사유지 보상업무 사업대상자를 강진군으로 지정하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사업 사유지 보상업무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강진군이 보상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보상업무 위탁자를 강진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기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해지 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강진군이 위탁받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사업 사유지 보상업무’를 2017. 4. 26. 전남개발공사에 재위탁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는데도, 보상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에 위·수탁 협약 해지 등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신청사 이전사업 보상업무의 위탁 권한을 받지 않은 자가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치단체 공기관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및 위탁수수료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신청사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재개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재개발원은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요청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전남개발공사에게 사업 준공될 때까지 설계용역 추진, 계약 및 감독업무, 건축 허가 및 행정절차 수행 등 신청사 건립사업을 대행하는 대가로 공사비의 5.68%인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시기는 위·수탁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시 30%, 착공 시 30%, 준공 시 30%, 준공정산 및 사업비 정산 후 10%를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개발공사의 위·수탁 사업비 청구가 있을 시 사업비의 집행계획 명세를 검토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체결 시 30%, 착공 시 30%, 준공 시 30%, 준공정산 시 10%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2017. 1. 20. 제출받은 [표 3] “전남개발공사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현황”과 같이 신청사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일)이 2021. 4. 13. 이전 2017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결쳐 377억원 위탁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전액을 집행하였다.

[표 3] 전남개발공사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계	설계용역비	기타용역/부대비	공사비	위탁수수료
2017	16.0	9.6	0.3		6.1
2018	143.9	4.8	1.0	132.0	6.1
2019	138.1		6.1	132.0	
2020	79.0		4.7	66.0	8.3
계	377.0	14.4	12.1	330.0	20.5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에서 위·수탁 사업비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을 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전남개발공사로 지급된 사업비가 [별표 1]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비 월별 집계표 명세"와 같이 2020. 2월에 168억원이 남아있는데도 전남개발공사의 위탁사업비 청구에 아무런 검토 없이 청구한 금액대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물은 2021. 4. 21. 사용승인 되었는데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2021. 12. 29.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된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2. 2. 18. 감사일 현재 기준 사업비 37,770백만원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어 집행 잔액 1,107백만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

4.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의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2)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부지가 당초 결정된 군관리계획 대비 토지편입 불가로 축소된 사업면적 3,889㎡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2. 시설비 및 부대비 12-2. 시설부대비 편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 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 12. 28.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전남개발공사 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전반을 전남개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시설부대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다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은 2019.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감독공무원 또는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 등 29명, 70회에 걸쳐 [별표 2]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명세”와 같이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여비로 15,112,76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인재개발원은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

지 일부만 남은 부정형 부지 형상으로 활용성이 극히 불량할 것으로 보여 민관 상생을 위해 잔여지 매수를 결정하였고, 신속집행 실적 달성을 위한 도정 협조를 위한 조치로 전남개발공사 명의의 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위탁 수수료 지급 시기에 맞춰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 청취, T/F 팀 회의 운영, 교육기자재 구축 추진 등 인재개발원 건립사업과 연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 출장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시설부대비로 지급한 것으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이 해당 잔여지가 부정형 형상으로 활용성이 극히 불량하다는 주장내용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영 여부 결정 시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직사각형 형태, 농기계의 회전이 가능한 폭 6.5m, 종전 기능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357㎡의 면적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잔여지의 활용성이 극히 불량하다는 인재개발원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협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수료는 준공 시 30%, 준공 정산 이후 10%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인재개발원이 신청사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2021. 4. 21.) 이후 지급해야하는 위탁수수료 40%는 2021년도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인재개발원은 2020. 7월에 위탁사업수수를 포함한 위탁사업비 377억원 전부를 전남개발공사 지정계좌로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인재개발원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고,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계약체결, 감정평가, 현장감독 체제비 등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여 직접적인 수행한 것이고,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 건립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에 해당하는 업무 협의 등을 위해 출장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여비를 시설부

대비로 집행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① 앞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시 「토지보상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주의)

②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사업과 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안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전남개발공사와 사업비 준공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 집행 금액을 확정하여, 사업 집행 잔액 1,107백만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위 업무 잔여지 매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하고 해당 잔여지가 사용계획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게 한 지방○○ 사무관 ○○○, 지방○○주사 ○○○은 훈계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훈계)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강사비 수당 지급 및 강사 수송차량 임차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해 시간 보상수당, 출강 시 교통비를 실비 보상하고, 강진으로 신청사 이전 이후에는 강사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 강사비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¹⁾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원거리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출강하는 강사의 소요 시간 보전 명목으로 강사 등급에 따라 시간 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10월부터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구루미 원격강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원거리 강사가 원격강의에 필요한 웹캠, 마이크 등을 구비하면 인재개발원 본원에 출강하지 않고도 비대면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비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경우 강사가 인재개발원

1)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안)(2020.12.21., 교육운영과-4111) 기안 담당자 ○○○, 검토 ○○○팀장 ○○○, 검토 ○○○과장 ○○○, 결재 공무원교육원장 ○○○

원격강의 교육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출장한 경우는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고, 강사의 근무처에서 원격강의를 실시한 경우는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외래강사가 인재개발원 본원으로 출강 없이 원격으로 강의를 진행한 중견리더양성과정 ‘♣♣♣♣♣♣♣♣♣♣’ ◎◎◎ 강사 등 7명에게 [표 1] “강사 시간보상수당 과지급현황”과 같이 시간보상수당을 708천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강사 시간보상수당 과지급 현황

순번	과목명	강사명	강의일자	과 지급 시간보상수당(원)	여비(원)	비고
	합계	7명		708,000		
1	♣♣♣♣♣♣♣♣♣♣	◎◎◎	2021.03.04.	100,000	미지급	비대면
2	♣♣♣♣♣♣♣♣♣♣	◎◎◎	2021.03.04.	80,000	"	"
3	♣♣♣♣♣♣♣♣♣♣	◎◎◎	0221.04.21.	96,000	"	"
4	♣♣♣♣♣♣♣♣♣♣	◎◎◎	2021.04.30.	96,000	"	"
5	♣♣♣♣♣♣♣♣♣♣	◎◎◎	2021.06.07.	96,000	"	"
6	♣♣♣♣♣♣♣♣♣♣	◎◎◎	2021.06.08.	144,000	"	"
7	♣♣♣♣♣♣♣♣♣♣	◎◎◎	2021.06.09.	96,000	"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강사 수송차량 임차용역 예산 낭비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인재개발원은 2021. 4. 9. 강진 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원거리 강사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도내 외 인재개발원 출강강사를 대상으로 목포역, 강진터미널, 강진 인재개발원을 하루 4회 총260km(편도 65km, 4회/일 운행) 운행으로 지원하는 강사수송 24인승 승합차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신청사 강사수송 차량 임차용역 계약 명세

계약명	계약대상	사업기간	계약금액(원)	임차료 산출내역	임차차량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송 차량 임차 용역	(주)○○○○	2021.04.05. ~2021.12.10	36,948,000	263,900원 × 140일	24인승 승합차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21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021년 집합교육 과정 취소 및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강사수송 차량 운행이 감소하여 2021. 12. 9. 차량 운영 일수를 30일로 변경하여 7,971,000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강사수송을 위해 체결한 24인승 강사 수송차량이 [별표] “신청사 강사수송 임차용역 운영 명세(2021년)”와 같이 2021. 4 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명 또는 2명의 강사를 수송하고 있는데도 예산절감방 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과지급 된 강사수당을 회수하고 향후 시간보상수당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착오 지급이 없도록 하고, 2022년부터 강사 수송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지급되지 않아야 할 시간보상수당 7건, 70만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강사 수송차량 운행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구내식당 위·수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1차 평가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와 2021. 3. 26. 위탁 운영 계약¹⁾을 체결하였다.

2.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에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안서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예비명부를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여 위원 보안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1) 위탁운영기간 2021. 4. 5. ~ 2023. 4. 4.(2년) / (주)○○○○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 선정 시에는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평가(서류심사, 30점)와 2차 평가(제안설명, 70점)를 진행하였고, 제안 설명을 통한 2차 평가 당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내부직원(7명)으로만 구성하여 [표 1] “구내식당 운영 업체 선정 평가위원단 및 평가점수 현황”과 같이 2021. 3. 24.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 구내식당 운영 업체 선정 평가위원단 및 평가점수 현황

연번	대상자			평가점수	
	소속	직급	성명	㉠㉠㉠㉠㉠	★★★★★(주)
1	교육지원과	㉠㉠㉠	㉠㉠㉠	65	57
2	교육지원과	㉠㉠㉠	㉠㉠㉠	67(최고)	65(최고)
3	교육지원과	㉠㉠㉠	㉠㉠㉠	53(최저)	52
4	교육운영과	㉠㉠㉠	㉠㉠㉠	55	48
5	교육운영과	㉠㉠㉠	㉠㉠㉠	64	60
6	교육운영과	㉠㉠㉠	㉠㉠㉠	59	59
7	교육운영과	㉠㉠㉠	㉠㉠㉠	60	48(최저)
총점				423	389
평균				60.6	55.2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업체별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특성상 계약상대자의 제안 내용이 상실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인재개발원은 직원 및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구내식당 및 매점을 2021. 4. 5.부터 2023. 4 .4.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표 2]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산정 현황”과 같이 부과·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산정 현황

(단위:원)

위탁자	허 가 재 산		허가기간	사용료	비고
	용도	면적			
☞☞☞☞☞	구내식당	674.42㎡	2021. 4. 5. ~2023. 4. 4.(2년)	21,063,440	
(사)●●●●●	구내매점	69.13㎡	2021. 4. 5. ~2023. 4. 4.(2년)	11,011,000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으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대부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청사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물품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물품 평가액은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사용료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산정·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료 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임대요율, 토지는 공시지가에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개발원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선정을 위해 임대료 산정 시 해당 규정에 따라 건물, 토지, 물품에 대한 평

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021. 3. 26. 구내식당 사용료 산정 당시에는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이 완료(2021. 4. 1.)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구 건축물(정다산 교육관)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감사기간 중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사용료를 재산정한 결과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697,000원(산정 당시 560,763원 적용)으로 총 6,333,491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물품의 경우 [별표 1] “구내식당 주방기구 물품 명세(당초 사용료 산정)”와 같이 업소형조립형 냉장고 등 총 24개에 물품평가액 61,801,000원이라고 산정하여 사용액에 포함시켰으나 감사기간 중 구내식당 물품 목록 재확인 결과 [별표 2] “구내식당 주방기구 물품 명세(재산정)”와 같이 총 76개의 물품평가액은 물품 사용료 재산정 시 5,790,540원으로 약 2,082,48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 3]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산정 현황

(단위:원)

구 분	사용료 산정액						
	대부면적 (㎡)	합 계 (부가세 포함)	계	건 물	토 지	물 품	부가세
재산정액(B)	674.42	27,396,931	24,906,300	18,802,830	312,931	5,790,540	2,490,630
당초산정액(A)	674.42	21,063,440	19,148,580	15,127,590	312,930	3,708,060	1,914,860
차액(B-A)	-	6,333,491	5,757,720	3,675,240	-	2,082,480	575,770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 3]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산정 현황”과 같이 정상적인 사용료는 27,396,931원인데도 6,333,491원이 적은 21,063,440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4. 구내식당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항 미이행

인재개발원은 (주)♀♀♀♀와 2021. 4. 5.부터 2023. 4. 4.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이하 “위탁 운영 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4-1. 공공요금 경비부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탁 운영 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쌍방의 경비 부담 기준은 아래 [표 4] “구내식당 위탁 운영 경비부담 기준 현황”과 같이 위탁업체가 식재료비,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구내식당 위탁 운영 경비부담 기준 현황

주체	부담내역
인재개발원	건물 유지 보수비, 구내식당 주방설비 및 비품
㈜○○○○○	종사자 인건비 및 피복비, 식재료비 및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사용료 등) 설비, 비품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수선비 등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위탁업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공공요금 등 정확하게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4] “구내식당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현황”과 같이 전기요금의 경우 구내식당 및 매점 전력량계 설치를 통해 2021. 8. 13.일부터 별도 부과되고 있었으나,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구내식당에 별도 부과되지 않아 인재개발원이 구내식당 사용분을 포함하여 총 7,803,430원을 부담하고 있다.

[표 4] 구내식당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현황(2021~2022년)

(단위:kw, 원)

구 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계	13,994	3,572,480	-	-
2021년 9월	3,707	766,080	-	-
2021년 10월	1,432	786,850	-	-
2021년 11월	2,402	656,400	-	-
2021년 12월	3,323	523,460	-	-
2022년 1월	3,130	839,690	-	-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4-2. 구내식당 운영실적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한국인의 성인 영양권장량을 준수한 식단에 따라 운영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수준 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위탁운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내역이 포함된 분기별 결산보고서를 매 분기 말 익월 15일까지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에는 월간 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위탁업체는 인재개발원이 사용허가한 조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021. 4. 5.일 인재개발원과 (주)○○○○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부서인 교육지원과는 결산보고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 당시 위탁조건 및 위탁 운영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 사용 및 친환경 식자재 1개 이상 사용, 가공식품을 제외한 전남 생산 식자재 80%(금액 대비)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감독부서인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위탁업체 결산보고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의 상하수도 사용량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상하수도 요금이 적정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시정)
- ② 구내식당 위·수탁사업 계약 추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따라 구내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인쇄물유인 등 수의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교재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표 1] “인재개발원 교육교재 등 발간 계약 현황”과 같이 2019. 1. 1.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총 385회에 걸쳐 412백만원 상당의 교육교재 등을 14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표 1] 인재개발원 교육교재 등 발간 계약 현황

(단위: 개, 건, 원)

회계연도	계약업체	계약횟수	계약금액	비고
계	14	385	412,348,650	
2019	11	188	196,457,410	
2020	9	110	115,004,140	
2021	9	84	98,056,100	
2022	3	3	2,831,000	2022. 2. 18.기준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교육교재 등 발간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계약의 경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87.9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인쇄물¹⁾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²⁾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인쇄물 제작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 11. 1.부터 「전라남도 소액 경인쇄물 발주 전자추천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소액 경인쇄물 전자추첨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직·사업소는 2,000만원 미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인쇄물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쇄비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발간하는 인쇄물 제작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2,000만원 미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인쇄물은 시스템을 사용

1) 교재(5510150901), 팸플릿(5510152001), 기타인쇄물(5510159901), 정기간행물(5510151901) 등

2) 2021. 12. 31.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2016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받아 교육교재 발간에 따른 예산 절감 미흡으로 통합발주 등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를 받았는데도 2017년 하반기 교육교재 단가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하고 2018년 상반기에 인쇄물 단가계약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종전의 개별계약으로 교육교재 등을 발간해왔으며,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업체 편중 차단 및 도내 동종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인쇄물 계약시 과도한 인쇄비 견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2018.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액경인쇄물 발주 전자추천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표 2] “인재개발원 연도별 교육과정 현황”과 같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과정, 608기수, 27,53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이고, 교육대상, 교육기간 등 교육일정이 예정되어 단가계약 등 일반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매월 교육과정별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별표] “인재개발원 교육교재 등 계약 세부 명세”와 같이 2019. 1. 1.부터 2022. 2. 18. 감사일 현재까지 최소 121,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 385회로 나누어 412,348,650원 상당의 교육교재를 발간하면서 1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인재개발원 연도별 교육과정 현황(2019~2022년)

(단위: 부, 천원)

연도	과정	기수	교육인원	교육교재예산액	비 고
계	180	608	27,539	722,709	
2019	39	142	6,322	257,002	최종예산액기준
2020	41	145	6,695	133,197	
2021	46	148	6,860	129,860	
2022	54	173	7,662	202,650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업체(2022. 2. 18. 감사일 현재 전라남도 내 471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49,162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3] 인재개발원 교육교재인쇄물 계약 현황(2019~2020년)

(단위: 부, 천원)

회계 연도	발행부수	계약금액(A)	입찰시 계약예정금액(B)	예산절감 가능금액 (A-B)	비 고
계	24,641	409,517,650	360,355,056	49,162,594	
2019	9,973	196,457,410	172,872,698	23,584,712	
2020	8,959	115,004,140	101,197,893	13,806,247	
2021	5,709	98,056,100	86,284,465	11,771,635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청사 조경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인재개발원은 청사이전에 따른 조경관리를 위해 2021. 5. 26.부터 2021. 12. 3.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공운영비로 조경 유지관리비 64,005천원을 집행하였다.

3-1. 예산 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는 전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냉·난방용 연료, 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 사용하고,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등은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별 목적·용도와 예산의 편성·통계목 성질에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021. 5. 26.부터 2021. 12. 3.까지 총 6회

에 걸쳐 추진한 인재개발원 이전에 따른 조경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다.

3-2. 조경수목 유지관리 사업 통합발주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가’ 및 ‘5-나’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계약은 단일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II-1-6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예산의 지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공사 내용이 유사하고 공사기간 및 계약시기가 같거나 비슷한 공사들은 통합발주함으로써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은 2021. 5. 26.부터 2021. 12. 3.까지 청사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위치, 작업 내용별로 강진군 소재의 (주)◆◆◆◆◆ 동일 업체와 6회에 걸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인재개발원 청사 조경 계약 현황(2021년)

(단위 :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		64,005,970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개원식에 따른 청사 조경 등 환경정비	2021.05.26.	9,937,000	(주)◆◆◆◆
새 청사 녹지공간 제초 및 흙덩굴 제거 등 환경정비	2021.07.23.	12,510,000	(주)◆◆◆◆
추석 맞이 청사 녹지공간 등 환경정비	2021.09.15.	14,310,000	(주)◆◆◆◆
인재개발원 청사 조경유지관리 추진	2021.10.12.	8,540,500	(주)◆◆◆◆
인재개발원 청사 조경수목 유지관리 추진	2021.11.15.	8,085,000	(주)◆◆◆◆
인재개발원 청사 조경수목 전지작업 등 유지관리 용역	2021.12.3.	10,623,470	(주)◆◆◆◆

자료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동종 업체(2022. 2. 18. 감사일 현재 강진군 내 9개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경쟁(낙찰 하한율 87.745%)을 통해 약 4,022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연간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교재 발간 시 단가계약 또는 소액경인쇄물 전자추천시스템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 ② 앞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